

2025년 한부모가족 전·월세보증금 소액대출사업



나는 가장이다



“(재)서민주택금융재단과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동행합니다”

대출내용

- **대출금액**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, **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(단,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)
※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
- **대출금리** : 무이자
- **대출용도** : 임차보증금
- **대출조건** 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(하단의 사업일정 참조)

〈예시〉

- 1)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▶ 대출 가능금액: 250만원)
- 2)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▶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/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- 3)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(본인부담금 400만원)으로 상향된 경우
: 4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▶ 대출 가능금액: 150만원)

상환방법 및 금액

- ▶ 300만 원 이하 대출 : 매월 5만 원 분할 상환
- ▶ 300만 원 초과 ~ 500만 원 이하 대출 : 매월 10만 원 분할 상환
- ※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 상환

- **인센티브 지급** :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대출금의 10% 인센티브 지급

신청대상

- **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**

- 1) 만 18세(취학 시 만 22세)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**100%** 이하
- 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

- 수도권 **1억3천만 원 이하**(서울, 경기, 인천)
- 광역시 **9,000만 원 이하**
- 그 밖의 지역 **8,000만 원 이하**

※ 월세는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보유기준 적용

〈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

(단위: 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 합
2인	3,933,000	139,817	70,053	141,260
3인	5,026,000	179,415	121,707	181,663
4인	6,098,000	219,196	154,802	222,471

※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 : 2007.1.1. 이후 출생자(취학자녀 : 2003.1.1. 이후 출생자)
※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
사업일정

구분	신규 또는 재계약일	서류 접수	선정 결과 발표	대출금 입금
1차	2024. 9. 1. ~ 2025. 3. 31.	2025. 3. 17.(월) ~ 2025. 4. 25.(금) ※ 2025. 4. 9.(수)까지 이메일 선접수 필	2025. 5. 26.(월)	5월 중
2차	2025. 1. 1. ~ 2025. 6. 30.	2025. 6. 16.(월) ~ 2025. 7. 25.(금) ※ 2025. 7. 9.(수)까지 이메일 선접수 필	2025. 8. 25.(월)	8월 중
3차	2025. 4. 1. ~ 2025. 9. 30.	2025. 9. 1.(월) ~ 2025. 10. 2.(목) ※ 2025. 9. 18.(목)까지 이메일 선접수 필	2025. 11. 10.(월)	11월 중

문의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 T. 02-861-3011

* 문의가 많아 유선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출 불가 세대

○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- 1)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- 2)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- 3)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4)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- 5)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 등)



* 단, 신용회복 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 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7) 공인중개인 없이 개인 간 계약을 진행한 경우 (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)

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

○ 접수방법: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(개인 신청 불가)

○ 제출서류(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)

구분	구비서류	작성요령	
필수서류	신청기관	① [서식1] 신청기관 신청서 -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(필수)	
	신청자	② 신분증(앞면)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-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후 신분증 복사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) - 신분증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	
		③ [서식2]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		④ [서식3] 대출거래약정서 1부 - 신청자 본인자필 작성	
		⑤ [서식4] 성실상환확약서 1부 - 대출 등 임의수정, 수정테이프 절대 불가(수정 필요시 새로 작성)	
		⑥ 자동차체 신청 확인서 1부 - 주거래은행에서 자동차체 신청 후 발급 가능	
		⑦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- 본인 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(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)	
		⑧ 임대차계약서(전체) 사본 1부 ·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(사본),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(사본) 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전체 사본 제출(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)	
		⑨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· 무상임차 · 비주택 거주자 ·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-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- 시설거주자는 '시설입소 확인서' 제출	
		⑩ 등기부등본 - 신규/계약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(발급음) - (발급처)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	
⑪ 소득 증빙 서류 (해당 분야 제출)		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(50%이하) ·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	- (발급처)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
	②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63%이하 ·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		
	③ 기준 중위소득 63%초과~100%이하 ·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·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	
해당자	신청자 심사평가 시 가점부여 · 청소년한부모 · 다자녀(3명 이상)양육한부모 · 장애인증명서 1부 - 등본(신청자 연령 및 동거자녀) 확인 - 가구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3등급)인 경우에 한함		
	신청자 신용회복 대상자 ·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,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- (발급처)신용회복위원회		
	신청자 만 18세 ~ 22세 이하 취학자녀만 양육 중인 경우 · 재학증명서 · 휴학증명서(휴학 시) - (발급처)해당 학교 및 정부24		
신청자 신청서 접수 이후 주소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· 등본 - 변동 사항 발생 이후 재제출			

※ 신청 서식 1~5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폐기/신청인 요청시에는 반환 가능
-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(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)